

중구 B-0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(안)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

의안 번호	113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4. .

제 출 자 : 중구청장

1. 제안사유

- 중구 B-07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같은법 제4조의3(정비구역 등 해제) 제1항 5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정비구역 해제해야 함.
- 이에 중구 B-07구역 주택재개발구역 해제(안)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정비구역 해제를 울산광역시시장에게 요청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가. 정비구역 결정(폐지)조서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m ²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폐지	중구 B-07 주택재개발구역	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7-8번지일원	62,120	감) 62,120	-	'12.4.12 울고 79호

나. 해제사유

-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(2015. 03. 09)되는 경우 구청장은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함

3. 법적근거

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

4. 주민의견청취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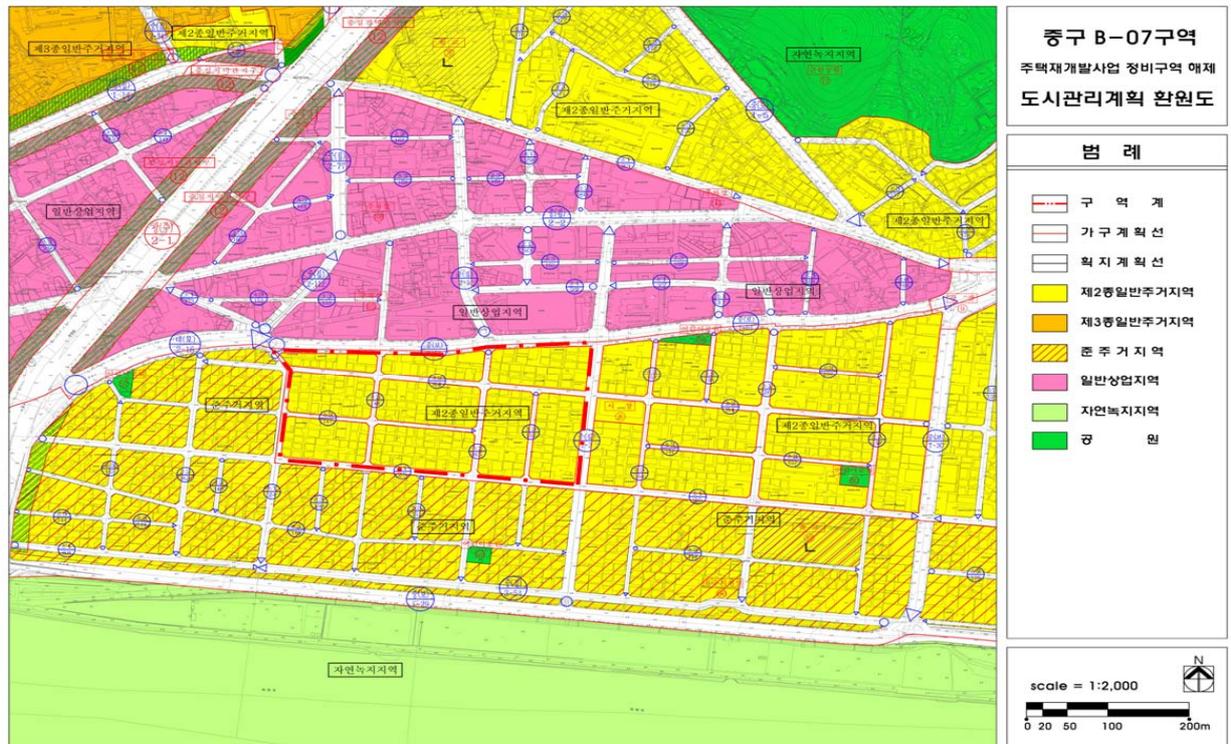
- 공람기간 : 2015. 3. 17. ~ 2015. 4. 15(30일간)

○ 주민의견 : “의견없음”

5. 위치도



6. 토지이용계획도

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1137)

1. 의안명 : 중구 B-0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
(안)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

2. 심사경과

- 제출연월일 : 2015. 4. 08.(수)
-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회부 : 2015. 4. 14.(화)
- 위원회심사 : 2015. 4. 21.(화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중구 B-07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이상
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같은법 제
4조의3(정비구역 등 해제) 제1항 5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
취소되는 경우 정비구역 해제해야 함
- 이에 중구 B-07구역 주택재개발구역 해제(안)에 대한 의회 의
견을 청취하고 정비구역 해제를 울산광역시장에게 요청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정비구역 결정(폐지)조서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m ²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폐지	중구 B-07 주택재개발구역	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7·8번지일원	62,120	감) 62,120	-	'12.4.12 울고 79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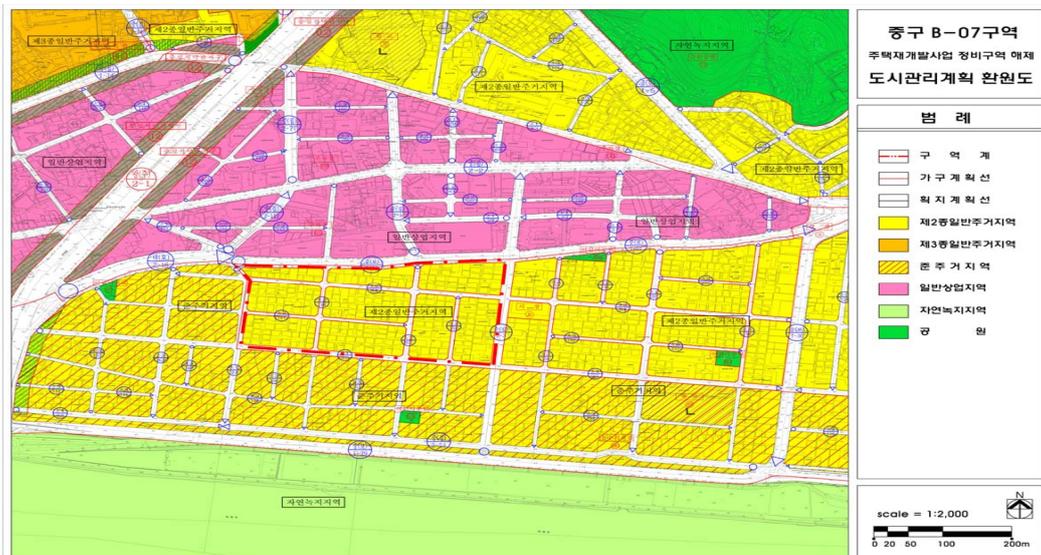
○ 해제사유

-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(2015. 03. 09)되는 경우 구청장은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함

○ 위치도



○ 토지이용계획도



4. 근거법령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

5. 검토보고(전문위원 김기호)

- 당해 지역은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-79(2012. 4. 12)호로 지정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2(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)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어
- 같은 법 제4조의3(정비구역등 해제)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
- 집행부에서는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지역주민 갈등 및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